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
2023. 6. 22(목) 10:00

제244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
(푸른미래도시국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추병수

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324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3. 5. 31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5. 31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,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금천구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금천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.

3. 참고사항

○ 관련법령

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(예비비),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(예비비)

○ 관련서류 : 2022회계연도 결산서(안)

4. 예비비 지출 현황

○ 재해·재난목적예비비

(단위: 원)

부서명	세부사업	지출결정액	지출액	집행잔액	지출사유
계		47,900,000		4,500,000	
공원녹지과	생활권공원 정비	47,900,000	43,400,000	4,500,000	어린이공원 내 파손된 배수시설을 복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확보

5. 검토의견

- 2022회계연도 푸른미래도시국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
공원녹지과 1건 4,340만원으로 어린이공원 배수시설 복구를 위하여
재난목적 예비비로 지출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한
타당한 지출이라 판단됨.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3. 6. 7.] [법률 제19428호, 2023. 6. 7., 일부개정]

- 제144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-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

□ 「지방재정법」

[시행 2023. 5. 16.] [법률 제19031호, 2022. 11. 15., 일부개정]

- 제43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,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6. 9.>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·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 <신설 2014. 5. 28.>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. <신설 2014. 5. 28.>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신설 2014. 5. 28., 2021. 1. 12.>

[전문개정 2011. 8. 4.]